

의안번호	2205101
의 퇴 인	이용우 의원
회 답 일	2024.12.4.
추 계 번호	24B4693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지침을 제정하고,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지침과 표준계약서를 보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억 2,000만원, 2030년 9,9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6억 1,800만원(연평균 1억 2,4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한 지침의 제정 및 보급(안 제 22조)	55	—	—	—	—	55	11
표준계약서의 보급(안 제23조)	165	99	99	99	99	563	113
추가재정소요	220	99	99	99	99	618	124

주: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제9조에 따른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함(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2	안 제14조(안전과 건강에 대한 권리)	국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의 안전보건조치를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4항) 국가는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하는 사람이나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음(제5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16조(사회보험에 가입할 권리)	국가는 제1항의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자나 일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4	안 제17조(모성보호 등에 관한 권리)	국가는 제1항의 모성보호 및 자녀돌봄과 일·가정 양립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자나 일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5	안 제20조(직업능력개발)	국가는 일하는 사람에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 직업능력개발 관계 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일하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직업능력개발에 필요한 그 밖의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의무규정
6	안 제22조(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한 지침의 제정 및 보급)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침(이하 “보장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개정하여 산업계 및 관련 기관 등에 체계적으로 보급하여야 함(제1항) 제1항에 따른 보장지침의 주요 내용 및 개정 주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7	안 제23조(표준계약서의 보급)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사람이 사업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함(제1항)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내용 및 보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8	안 제24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일하는 사람은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9	안 제25조(지도와 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10	안 제26조(시정조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미대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명시한 선언적 규정으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2	안 제14조(안전과 건강에 대한 권리)	—	• 미대상(제4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명시한 선언적 규정으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	• 미첨부(제5항)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드는 비용의 지원 규모에 따라 결정되나, 현시점에서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 산출 곤란
3	안 제16조(사회보험에 가입할 권리)	×	• 미첨부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가가 일하는 사람의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함에 따른 기존사업의 확대 규모 및 신규사업의 추진 규모에 따라 결정되나, 현시점에서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 산출 곤란 — 참고로 2024년 시행 중인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두루누리) 사업은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소규모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부담분의 일부(80.0%)를 지원하는 사업임

- 1) 제101조(감독 기관) 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 2)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조(근로감독관의 직무) ① 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관계법령과 그 하위규정의 집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11조에 따른 사업장 근로감독
- 3)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1조(감독결과 조치) ① 감독관은 사업장감독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별표3 및 별표4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4	안 제17조(모성 보호 등에 관한 권리)	×	• 미첨부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모성보호 및 자녀돌봄과 일·가정 양립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함에 따른 기존사업의 확대 규모 및 신규사업의 추진 규모에 따라 결정되나, 현시점에서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 산출 곤란 – 참고로 2024년 국가는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출산·육아기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산전후 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을 시행하고 있음 – 또한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이에 2024년 기준 4,000억원을 지원
5	안 제20조(직업 능력개발)	×	• 미첨부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직업능력개발에 필요한 그 밖의 교육훈련에 따른 기존사업의 확대 규모 및 신규사업의 추진 규모에 따라 결정되나, 현시점에서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 산출 곤란
6	안 제22조(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한 지침의 제정 및 보급)	○	• 유사사례 참고 – 지침의 제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산출
7	안 제23조(표준 계약서의 보급)	○	• 유사사례 참고 – 표준근로계약서 개발에 따른 비용을 산출
8	안 제2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	• 미대상 –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 현행 「근로기준법」은 고용노동부와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규정¹⁾하고 있으며,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과 하위규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사업장을 감독할 수 있으며,²⁾ 사업장의 위법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와³⁾ 노무관리지도, 체불임금 청산지도 등을 시행 – 따라서 제정안은 현재 고용노동부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9	안 제25조(지도와 명령)		
10	안 제26조(시정 조치)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한 지침의 제정 및 보급(안 제22조)

- 제정안은 일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업종별·노무제공방식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고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보급하도록 규정
 - 고용노동부장관이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지침을 수립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지침의 제작 및 개발과 관련한 연구용역의 사례를 토대로 산출
 - 지침의 제작 및 개발과 관련한 연구용역은 제정안의 시행 첫해인 2026년에 수반되는 것으로 가정
 - 지침의 제작 및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5,500만원/건

[표 2] 지침의 제작 및 개발 관련 연구용역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수행기관	연도	금액
고용상 연령차별 차별판단지침 등 업무 매뉴얼 제작	고용노동부	2020	40
통합적 돌봄 욕구 기반 서비스 제공지침서 개발	보건복지부	2023	70
평균			55

자료: 나라장터

[표 3]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지침의 제정 및 보급 비용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추가재정소요	55	—	—	—	—	55

주: 1.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나. 표준계약서의 보급(안 제23조)

- 제정안의 시행에 따라 일하는 사람이 사업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종별·노무제공방식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표준근로계약서의 개발과 관련한 연구용역은 제정안의 시행 첫해인 2026년에 수반되는 것으로 산출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례를 바탕으로 추계
 - － 표준계약서 관련 연구용역 평균금액 6,600만원/건

[표 4] 표준계약서의 개발 관련 용역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수행기관	연도	금액
2024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공정거래위원회	2024	66
2023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공정거래위원회	2023	66
2022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공정거래위원회	2022	66
2021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공정거래위원회	2021	66
평균			66

자료: 나라장터

- 이후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기 위한 비용은 업종별·노무제공방식별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용역을 시행하고 이를 보급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유사사례의 평균금액을 준용
 - － 업종별, 노무제공방식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매년 2건의 연구용역을 시행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 － 업종별, 노무제공방식별 연구용역 5,000만원/건

[표 5] 표준계약서 보급 관련 연구용역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수행기관	연도	금액
스마트팜 수출·수주 표준계약서 개발 용역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2024	50
경기도 표준계약서(프리랜서 강사) 개발 및 보급	경기도	2024	50
서울형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 개발 용역	서울특별시	2024	49
평균			50

자료: 나라장터

[표 6] 표준계약서의 보급 비용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추가재정소요	165	99	99	99	99	563

주: 1.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지침을 제정하고,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지침과 표준계약서를 보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억 2,000만원, 2030년 9,9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6억 1,800만원(연평균 1억 2,4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7]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한 지침의 제정 및 보급(안 제 22조)	55	—	—	—	—	55	11
표준계약서의 보급(안 제23조)	165	99	99	99	99	563	113
추가재정소요	220	99	99	99	99	618	124

주: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재량규정인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 결과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